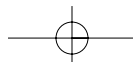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집

2016. 4.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1305-01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 귀농어 ·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집

2016. 4.




# 목 차

1.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1
2.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	41
3.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	47
4. 귀농인의 집 시행지침 .....	85
5.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지침 .....	105
6.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시행지침 .....	129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목 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페이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7
제2조(정의)	제2조(귀농어업인)		7 7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3조(귀촌인)		9 10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10 11
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		1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페이지
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15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15
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7조(귀농어·귀촌의 실태조사)		16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		17
	제9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요건 등)		19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20
		제2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	21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2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 책의 추진 등)	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		23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페이지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24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 자격 등)		24
제16조(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26
제17조(농지·어장매입 등 지원)	제13조(농지·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		26
제18조(시설·장비 등의 지원)			27
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28
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29
제21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16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30
			3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페이지
		제3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	31
제22조(정보의 제공)			32
제23조(조세의 감면)			32
제24조(보고 및 검사)			33
제25조(청문)			34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34
	제17조(업무의 위탁)		34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34
부칙 <제13019호, 2015.1.20.>	부칙 <제26411호, 2015.7.20.>	부칙 <제156호, 2015.7.21.>	36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시행 2015.12.23.][법률 제13383호, 2015.6.22., 타법개정]</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5.6.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li> <li>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li> <li>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li> </ol>	<p>[시행 2015.12.23.][대통령령 제26754호, 2015.12.22., 타법개정]</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귀농어업인)</b> ① 「귀농어·귀촌 활</p>	<p>[시행 2015.7.21.][농림축산식품부령 제156호, 2015.7.21., 제정]</p>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lt;개정 2015.12.22.&gt;</p> <p>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lt;개정 2015.12.22.&gt;</p> <p>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p>	<p>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p> <p>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p> <p>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p> <p><b>제3조(귀촌인)</b>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p> <p>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b>제3조(국가 등의 책무)</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b>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b>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b>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p> <p>4. 귀농어업인</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li> <li>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li> <li>3. 귀농어·귀촌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li> <li>4.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li> <li>5.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li> <li>6.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li> <li>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li> </ol>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p>	<p>제4조(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어·귀촌 희망자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li> </ol>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협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5.6.22.&gt;</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귀농어·귀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이전 5개년도 시</p>	<p>2. 귀농어·귀촌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p> <p>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p> <p>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p> <p>5.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p> <p>② 법 제5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법 제5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p> <p>2. 법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제4항의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5.6.22.&gt;</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b> ①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p>	<p>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5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b> ①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 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5.6.22.&gt;</p> <p>④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p>	<p>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도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제6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시·도계획 또는 시·군·구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시·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각각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군·구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7조(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b>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p>	<p>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도계획의 시행을 위한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b>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b>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안정</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기준과 대상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귀농어·귀촌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p>	<p>적인 영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다른 귀농어업인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p> <p><b>제7조(귀농어·귀촌의 실태조사)</b>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이 시행되는 전년도에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p> <p>②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유형별, 성별, 지역별 및 연령별 현황</li> <li>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소득현황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li> <li>3.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교육훈련에</li> </ol>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p>관한 사항</p> <p>4.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에 관한 사항</p> <p>5. 귀농어업인의 농지·어장 등 농어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p> <p>6. 귀농어업인의 작물재배, 가축사육 및 수산양식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p> <p>7.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도시 재이주 현황 및 원인</p> <p>8. 그 밖에 귀농어·귀촌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③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b>제8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교육훈련)</b></p>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어업인의 영농·영어를 위한 기술·경영 교육 사업</li> <li>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화합에 필요한 교육 사업</li> <li>3.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 강사의 발굴·육성 사업</li> <li>4.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li> <li>5.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업</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li> <li>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li> </ol>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p>	<p>족 또는 가족</p> <p>3. 만 40세 미만의 귀농어·귀촌 희망자</p> <p>4. 그 밖에 우선적으로 지원 및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p> <p><b>제9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b>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lt;개정 2015.12.22.&gt;</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p> <p>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p> <p>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p> <p>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li> <li>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 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li> <li>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li> <li>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li> </ol>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⑥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p>	<p>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p> <p>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li> <li>3.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li> <li>4. 농업인·어업인 교육, 상담·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li> <li>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li> </ol> <p>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li> <li>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li> <li>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li> <li>4. 제24조제1항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li> <li>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li> <li>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li> <li>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li> <li>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li> </ol> <p>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li> <li>2. 인력 및 시설 현황</li> <li>3. 사업계획서</li> <li>4.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li> </ol>	<p><b>제2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신청 등)</b>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③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받은</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실적</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p>제10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시행하기 위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 농어업 기술 및 농어촌 생활정보, 귀농어업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li> <li>2.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li> </ol>	<p>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정착에 필요한 교육, 주거 및 농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b>제11조(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사업 등)</b></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어·귀촌 희망자들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사업</li> <li>2. 귀농어업인·귀촌인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활용한 현장교육 사업</li> </ol>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교류협력 사업</p> <p>3.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내·관외 단체 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p> <p>4.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과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p> <p><b>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b> ①</p>	<p>3. 임시 주거 공간 제공 등 지역주민과 연계된 초기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정착 지원 사업</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시책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p> <p>1. 장소 및 장비 협조</p> <p>2.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제공</p> <p>3. 그 밖에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p> <p><b>제12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의 신청자격)</b></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li> <li>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li> <li>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li> </ol>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p>	<p>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예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6조(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7호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세제상·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p> <p><b>제17조(농지·어장매입 등 지원)</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지, 축사, 양식장, 어선, 어구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3조(농지·어장매입 등의 지원 대상 등)</b>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6년의 범위에서 각 사업별로 정한 이주기간을 충족한 사람을 그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b>제18조(시설·장비 등의 지원)</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영농·영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기자재 임대·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관외 유희농지·유희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p>	<p>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보수 지원을 할 수 있다.</p> <p><b>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b></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귀농어업인을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방법·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4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b></p> <p>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어업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어촌 전입일을 기준으로 이주기간이 만 5년이 경과된 사람</li> <li>2. 농어촌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사람</li> <li>3. 전문적인 농어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li> <li>4.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li> </ol> <p>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을 선정할 때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귀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귀농어업인 후계 인력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5조(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li> <li>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li> <li>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1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귀농어업인·귀촌인은 귀농어·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귀농어·귀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li> <li>2.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li> </ol>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할 것</p> <p>3. 귀농어·귀촌공동체가 운영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갖출 것</p> <p>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농어·귀촌공동체로 등록하려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귀농어·귀촌공동체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b>제3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신청)</b></p> <p>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제22조(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p>	<p>④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p> <p><b>제24조(보고 및 검사)</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센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b>제25조(청문)</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b>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b>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농어·귀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b>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b>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p>	<p><b>제17조(업무의 위탁) ①</b>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종사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p>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5.12.2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li> <li>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li> <li>3. 법 제1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의 지정·지원</li> <li>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li> <li>6. 법 제14조에 따른 박람회 등의 개최</li> <li>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li> </ol>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13019호, 2015.1.20.&gt;</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귀농어·귀촌종합센터는 이 법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본다.</p> <p><b>제3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은 이 법에 따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사업으로 본다.</p>	<p>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6411호, 2015.7.20.&gt;</p> <p>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26754호, 2015.12.22.&gt;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⑧까지 생략</p> <p>⑨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을 "</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b> &lt;제156호, 2015.7.21.&gt;</p> <p>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b>부칙</b> &lt;제13383호, 2015.6.22.&gt;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lt;단서 생략&gt;</p> <p><b>제2조 및 제3조</b> 생략</p> <p><b>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lt;59&gt;까지 생략</p> <p>&lt;60&gt; 법률 제13019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어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으로 한다.</p> <p>제2조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p>	<p>「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 또는 어업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어업인"을 "어업인"으로 한다.</p> <p>제9조제1항제4호 중 "농어업인 교육"을 "농업인·어업인 교육"으로 한다.</p> <p>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한다.</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으로 한다.</p> <p>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한다.</p> <p>제5조제4항 본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중앙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 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수산업·어</p>	<p>⑩부터 &lt;42&gt;까지 생략</p> <p><b>제3조 생략</b></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p>촌정책심의회"로 한다.</p> <p>제6조제3항 중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도 어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시·군·구 어업·어촌정책심의회"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 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 산업·어촌정책심의회"로 한다.</p> <p>&lt;61&gt;부터 &lt;63&gt;까지 생략</p>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법인 설립일
	소재지	전화번호

업무수행 경험인력의 수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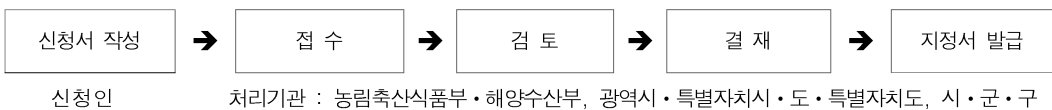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신청인 제출서류	1. 법인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서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의 법인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였으므로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인

##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열람일	처리기간
공동체명			
신청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공동체 소재지 주소		공동체 대표번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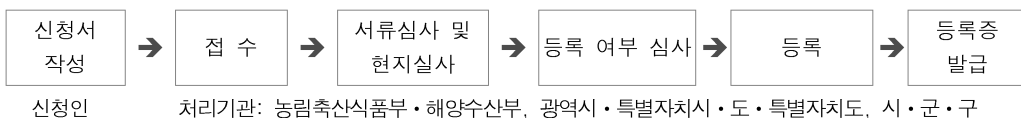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증명서류 제출 1.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가구 명단(10가구 이상) 2. 귀농어·귀촌공동체가 귀농어·귀촌의 실행을 위하여 공동으로 준비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

1. 공동체명 :
2. 공동체 소재지 주소 :
3. 공동체 대표번호 :
4. 대표자 성명 :
5. 대표자 생년월일 :
6. 대표자 주소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의 공동체를 귀농어·귀촌공동체로 등록합니다.

년 월 일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 2016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 □ 주요 개정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1. 사업 대상자	○ 연령제한 없음	○ 65세 이하인자	상환기간이 장기간(15년)임을 고려, 고연령자의 대출을 제한하여 부실농가 발생을 예방
	○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보유자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이하의 농가경영체등록자, 농지원부 소유자를 귀농인에 포함	귀농 준비를 위해 예비농업, 농지취득 등 사전 준비 차원의 농업활동 인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이주기한)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귀농지원법상 사업대상자는 6년 미만의 범위에서 선정가능 조항 준용
	○ (거주기한) -제대군인, 새터민, 재소자 거주기한 제한 없음	○ (거주기한) -직업군인, 새터민 거주기한 5년 신설, 재소자 제외	재소자는 재소기간 주소지 미이전. 타 자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
	○ 사이버교육, 재능나눔, 봉사활동 등 50시간 인정	○최대 40시간 축소 ○농작업 포함	농촌현장, 지자체 교육 등 현장실무형 귀농교육 확대 필요성
	○ (교육실적) 교육시간 100시간	○ (교육실적) -지자체 교육 8시간 필수 항목 포함	귀농인인 지자체 담당자 면담을 통해 귀농 현실에 대한 정보습득 기회 마련 ('16.7월부터 시행)
3. 자금의 용도	○ 농촌비즈니스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 농촌비즈니스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촌레스토랑 개선	농어촌정비법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내용 명확화
	○ 주택자금 활용처에 공동주택 제외	○ 공동주택 포함	귀농인의 읍면단위 공동주택 거주지 확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4. 사업자 선정	<신설>	○ 지자체에서는 농지가 격의 상승, 농지의 방치, 기획부동산 피해 방지를 위해 심사를 강화할 수 있음	농지 가격상승 및 기획부동산 피해사태 방지
5. 사후 관리	<신설>	○ (승계)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사업승계조항 신설	대상자의 사망시 “승계”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신설>	○ (농업경영체 등록) 창업자금 대출자는 자금 수령 후 1년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자체에 해당 사실 통보	불법 자금대출 방지 및 사후 관리 강화

##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 장 강형석	044-201-1511
		사무관 손경문	044-201-1518
		주무관 금경연	044-201-151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 장 이덕기	02-2080-7582

\*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www.returnfarm.com](http://www.returnfarm.com)를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I. 사업개요

####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 2.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합 계	500	600	700	1,000	1,500	1,500
용 자	500	600	700	1,000	1,500	1,500

### II.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인 포함). 단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자



- \* '농촌', '농업'의 범위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준용
  -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 연령기준 시행일: 만 65세 이하규정은 2016.7.1일부터 시행함. 다만, 만65세 초과 귀농인 중에서 2015.12.31일 기준 50시간이상 교육 이수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신청 가능
  - \* 단.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상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①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예외로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경우 》

- ①(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 준비를 위한 농지원부, 농가경영체 등록기간이 2년 이하인 자
- ②(이주기한) 농촌 지역으로 2년내에 이주할 계획인 개인사업자 또는 퇴직 예정자(이하 “예비귀농인”이라 한다)도 지원대상에 포함 가능. 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퇴직전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전이라도 주소지 이전 확인 후에 대출 가능(이 경우 예비귀농인은 추후 시·군에 퇴직증명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 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지자체) ⇨ 주소이전(귀농인)  
 ⇨ 확인서(계획) 발급(지자체→ 신청인) ⇨ 농협은행에 확인서 제출(귀농인→ 농협) → 신용조회 및 용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처)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이내, 귀농인)  
 ⇨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

- ②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 직업군인, 새터민은 근무지(거주지)가 농촌지역 경우,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제대 만 5년까지 인정)
- ③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단, 100시간 중에 지자체가 실시하는 교육을 최소 8시간이상 필수 이수해야 함
- 상기 기관(또는 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농업 교육으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www.returnfarm.com)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한정함
  - \* 교육관리 시스템 개편완료('15.12월 예정) 후 기관별 교육과정 등록 예정
  - \*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실시하는 소규모 강의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함
  - **지자체 교육(8시간):** 지자체 교육(청강 포함),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
  - \* 확인서: 지자체(또는 교육기관)가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11호 서식) 또는 수료증
  - ※ 지자체 교육(8시간)을 포함하는 교육이수실적 적용시기 : 2016. 7.1일 이후 적용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이수 시간으로 인정
  -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 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 제61조제2항 “부당사용사유” 목적외 사용, 용도의 사용, 허위자료 제출, 행정기관의 신청제외 통보 등
  - \* 제61조제3항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사업지연에 따른 지원목적 달성 불가능 등
- 농업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 **예비귀농인**이 사업대상자 선정이후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일정기간 내에 퇴직이나 사업자등록 이전·말소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하려는 자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i)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버섯재배사·지장시설 설치 및 구입,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 “농업용화물자동차”는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축산, 농촌비즈니스 분야도 동일함)
  - ii)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소형농기계 100%, 대형농기계 구입가의 50%미만 :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앙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iii)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 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항)”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

\* “**농가레스토랑**”은 향토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생산 및 지역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를 사용하는 향토음식점 및 전통찻집을 말한다.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용자 시 유의사항 》**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의 농지, 하우스, 축사 등 시설물의 구입은 지원불가. 다만, 형제자매인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정상적인 매매로 승인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한(육)우 입식 자금은 지원 제외
- 납유쿼터와 납유처를 추가로 확보한 경우 유우자금은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매자금 지원 가능
- **농촌비즈니스 분야는 농신보 보증지원의 지원대상이 아님**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의 보증심사를 통해 보증실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농신보에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 책임하에 신용대출 등 실시(부분보증제도 운영)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 농업 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신축 자금 : **2%**(신규 및 기존 대출자)
  - \*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신축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 기한 : 용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6. 대출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
  - \*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용자 추천 : 사업대상자의 이주기한(만5년) 내에 시장·군수는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추천 가능
  - 정부·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 농촌비즈니스분야는 농신보의 보증지원 대상이 아님에 유의
  -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용자방식>

- 농지·축산·주택·가공공장 등 소유권 등록(명의이전) 또는 시설설치 이전에도 사전대출이 가능함

- 사전대출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비의 최대 5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 대상자는 사전대출에 필요한 소요금액관련 증빙자료(검인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자료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계획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 **시설설치, 주택 신축,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등 사업진척에 따른 사후 대출(기성고대출 포함)의 대출한도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금액이내**
- \* 대상자는 사업완료 및 소요금액 증빙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사업주관기관은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발급
- \* 대출취급기관은 토지 또는 시설 구입비의 잔금대출(완공 후 일시대출 포함)을 취급하는 경우 대상자가 사업추진계획확인서와 공인매매계약서(부동산거래신고필증 포함)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당해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의 담보권설정의 동시이행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실적확인서의 징구를 생략하고 잔금대출 실행 가능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추진 체계》

시행지침 발달(농식품부→ 도·시·군, 농협) ⇨ 농업창업 및 금융 상담(귀농인→ 시·군, 농협)  
 ⇨ 사업신청서 제출(귀농인→시군) ⇨ 창업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귀농인) ⇨  
 신용·담보 조회 및 대출(농협→귀농인)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후관리(시·군, 농협)

#### 1. 사업신청 단계

#####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 준비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 보험카드 1부
- 사후 절차
  - 신규 사업대상자는 창업자금 수령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해당 지자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 한다.
  - ※ 각 지자체에서는 2016.1.1일 기준, 기 창업 대상자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등록자는 등록하도록 통보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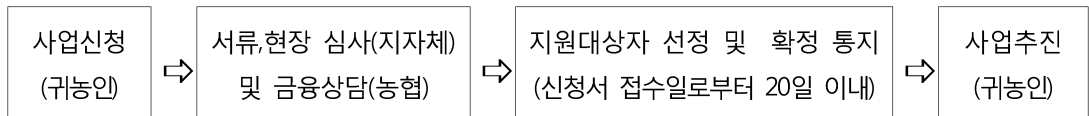
### 《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 창업계획서 제출(신청자→지자체) ⇨ 창업계획 심사 및 확인서 발급(시군→신청인)  
 ⇨ 확인서 농협은행 제출(귀농인→농협) → 신용조회 및 용자(농협은행→귀농인, 사용자)  
 ⇨ 창업자금 실행 통보(농협, 귀농인→지자체) ⇨ 농업경영체 등록(1년이내, 귀농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등록 결과 통보(1개월, 귀농인→지자체)

###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지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2. 사업자 선정단계



- 현장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시장·군수는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신청자에게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 기 지원받은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를 대출취급기관에 의뢰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가 귀농인 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사용용도와 귀농일을 명시하여 귀농인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용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서비스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대상자를 통지 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 마감일 등을 안내



####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li> </ul>
시도, 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li> <li>◦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및 대출한도액 안내</li> <li>◦ 창업계획서 심사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lt;별지 제4호 서식&gt;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li> <li>◦ 대출이 실행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li> </ul>
대출취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등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소유권 이전과 담보설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생략 가능)</li> </ul> </li> <li>◦ 대출기관은 시군에 대출결과를 즉시 통보(유선 또는 문서)</li> </ul>
사업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완료 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li> </ul>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추진실적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5.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용자금 지원연도부터 용자금 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대상자 관리대장(별지 제14호 서식)과 관리카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읍면사무소를 통한 실태조사 실시
- 시장·군수는 용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용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용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 귀농인이 사업자금 용자 후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이상이 발생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귀농인 자격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승계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사유를 검토하여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승계 시에는 아래의 내용을 따르며,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대출취급기관 등에 통보해야 함(별지 제13호 서식)
  - 승계 후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용자금을 회수한다.
  - 시장·군수는 승계자에게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지원자금 시행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용자금은 승계자 명의로 서류를 갱신하여야 하며 용자금 및 용자조건은 사망한 자 등의 잔여액과 조건 등을 승계(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련규정에 적합 경우에 한함)

###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이전 후의 사후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가 담당
  - \* 구입한 농지·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 시장·군수는 사업장소 이전 사전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였을 때에는 관련기관(이전 후 시·군)에 관련자료 등 통보
- 사업자는 폐업·이전 등 농지 매매 후 시장·군수에게 즉시 통보

### 〈제제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예비귀농자 중에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일정 기간 내에 퇴직·이전·말소 통보를 하지 않거나, 사업을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 농업 관련분야: 농산물 가공·유통 분야, 농약판매업, 종자판매, 농기계수리 등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 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지

###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연도별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익년도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IV.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청·군청(또는 농업기술센터)

####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소정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따라 선정할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귀농인의 융자한도액은 “금융기관의 개인에 대한 신용과 담보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자	성명		(한자 )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귀농 후					H.P :		
	학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m <sup>2</sup>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m <sup>2</sup> - 농 기계 :							
사업 신청 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즈니스							
<p>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신청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50px;">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 귀하</p> <p>*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빙자료</p> <p>*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p> <p>* 기타서류는 Agrix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p>									

(별지 제2호 서식)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 2. 영농기반

#### ① 영농규모(m<sup>2</sup>)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 ② 시설현황(동/m<sup>2</sup>)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벼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 ④ 재배현황(m<sup>2</sup>)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기 정책자금 대출현황 【추가】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 4. 사업계획

#####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할 계획으로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 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버섯사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계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중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시·군	구분		소계	수도 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중 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중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시·군	구분		소계	수도 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서식)

## 귀농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귀농인은 창업자금 수령후 농업경영체를 등록(1년내)하고, 지자체에 통보(1개월내)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계획)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1,000m <sup>2</sup>	15,000	15,000		'14. 6.1.~7.3.
양 돈 입 식	30두	15,000	15,000		'14. 6.1.~6.15.
농 지 구 입	3,000m <sup>2</sup>	30,000	30,000		'14. 6.1.~6.3.
주택 구입·신축	150m <sup>2</sup>	20,000	20,000		'14.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하고자)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시장·군수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직인)

용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 농협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시 ○○과 담당(☎)에게 유선통보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생년월일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혼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 귀농사업 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성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원 금액							
회수 완료자	인원 금액							
회수 중인자	인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7호서식)

## 용자(□창업자금,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용 자 액		미용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						
제주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 주택 확인서

### 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m<sup>2</sup>, 주택전용면적 m<sup>2</sup>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경사유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합판)	성명 : (한자 : )	생년월일 :	연락처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 ) 우편번호 :	귀농후 주소  우편번호 :	주 사업작목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귀농 정착자금(융자, 보조) 지원상황					
세부사업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m <sup>2</sup> , 두, 수 등)								
영농기반 ~ 본인소유· 승계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종류별 규모(m<sup>2</sup>)</li> <li>○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 종류별 규모(대)</li> <li>○ 장비(트랙터, 컴퓨터, 트럭, 승용차, 이앙기 등)종류별 규모(대)</li> </ul>							
경영실적 (천원)	농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농가 변답	농촌생활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 성 명								

-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등의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작성
-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 ③ 농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 ⑤ 농업소득 산출 곤란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 ⑥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 귀농인 확인서

### 귀농인 현황

- 성 명 : (연락처 : )
- 생년월일 :
- 귀농전(前) 주소 :
- 귀농후(後) 주소 :
- 귀 농 일 :
- 사용 용도 :

### 확인내용

상기 인은 ○○시(군)의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귀농인임을 확인합니다.

발급일 20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 시군의 읍면장, 시군에서 지정된 귀농센터장 등 발급 가능

\* 본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까지 유효합니다.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자 관리대장(예시)

연번	성명	읍면	연락처	경영 형태	승인 날짜	대출금(백만원)		연차별 영농 확인 (영농 확인일자 등)		
						농업	주택	1년차	2년차	.....

\* 관리대장 양식이나 보관 방법(대장, 엑셀 등)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좋은 방식을 선택하되, 귀농인에 대한 기초사항과 관리 실태를 알 수 있도록 작성·비치

(별표 1)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2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20	17	13	11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30점)	농업,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30	26	23	20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물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 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기간이 2일이상 유효(예외: 귀농센터, 지자체교육)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를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지자체 교육시간은 150%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 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 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졸업자,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 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3. 전입 후 농촌거주 (20점)	거주기간	20	17	13	11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 의욕 (1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10	8	7	5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명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 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5. 영농규모 (10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10	8	7	5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평점
		A	B	C	D		
6. 사업계획의 적정성 (10점)	재배지역, 재배 기술상의 적합성 및 타농가 재배 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자금 조달계획 및 생산·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p>○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증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지자체 교육시간(8시간) 초과 이수자</li> </ul>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지원가	지원불가	<p>○ 지원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점이 60점 이상인자</li> </ul> <p>○ 지원불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점 60점 미만인자</li> <li>-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li> </ul>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 귀농인의 집 시행지침



## 2016년도 귀농인의 집 시행지침

### □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사업 내용	○ 귀농인의 집 신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으로 한정	○ 신축이 불가한 예산(3천만원)으로 사업 운영에 혼란
사업 규모	○ 1개동 수리시 3천만원 고정	○ 3천만원 이하 여러채 수리 가능	○ 자금 활용도 제고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 장 강형석	044-201-1511
		사무관 손경문	044-201-1518
		주무관 금경연	044-201-1519
시도/시군	농정총괄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I. 사업개요

#### 1. 목적 및 사업추진 방향

-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영농기술을 배우고 농촌체험 후 귀농할 수 있도록 「귀농인의 집」 제공 지원
- 귀농인의 집 입지는 지역 내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을 희망하는 마을과 시·군이 협의하여 자율 선정
-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을 위한 거점마을로 육성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육성)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량(개소)	-	-	70	70	140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투입 재정	계	-	-	2,100	4,200
	국 고	-	-	1,050	2,100
	지방비	-	-	1,050	2,100

### II.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개요

- 사업량 : 70개소
- 사업기간 : '16. 1월 ~ '16. 12월까지
- 재원소요 : 2,100백만원(국고 1,050백만원, 지방비 1,050백만원)

## 2. 주요 사업내용

-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등을 리모델링·수리하여 귀농인의 집 운영
- 귀농인의 집 수리
  - 기존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소유주와 장기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리
  - \* 입주민을 위한 맞춤형 영농기술 및 양질의 교육, 마을 커뮤니티 및 친교형성 지원 등의 귀농·귀촌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연계지원

## 3. 사업 시행자(시행주체) : 시장·군수

- 귀농인의 집 수리를 직접 시행하거나 전문 시공업체에 위탁시행 가능

## 4. 지원 대상지역 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중 읍·면 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지역
  - 특별시·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은 제외
  - \*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 포함
- 시군 또는 마을협의회가 귀농인의 집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농어촌지역의 빈집을 확보하여 소유주와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업신청일 현재 귀농 지원조례 제정, 녹색체험마을, 산촌마을, 정보화마을, 으뜸마을 등 국비 지원을 받아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 예비 귀농·귀촌인이 실제 정주할 수 있도록 연락, 안내, 정보제공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기타 도농교류 활동 경험이 있고 도시민 유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며 지원의지가 분명한 마을

## 5. 지원형태(예산과목: 자치단체경상보조)

- 재원 및 지원기준 : 국고보조(농특회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세대당 3천만원 이내

- \* 지자체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가능
- \* 부분개량은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 6. 사업추진체계

- i)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각 도
- ii)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 iii) 사업추진절차

귀농인 의 집 조성사업계획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 → 도 →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공모	: 시·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보고> 시·군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	시·군, 사업대상자(마을 단위)
준공,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시·군
운영 및 유지관리	시·군, 마을협의회

### iv) 기관별 역할 분담

- 시군, 마을(사업신청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 귀농인의 집 입주자 모집 및 입주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 도, 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계획수립, 수요조사, 주택 건축 인허가 및 표준설계도 안내, 건축행정 및 기술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및 소요 지방비 확보
- 농림축산식품부 : 귀농인의 집 조성 종합계획 수립,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 및 자금 배분, 사업결과의 분석·평가 등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 및 대상지 선정단계

시·군(도)

- 시장·군수는 마을, 귀농단체를 대상으로 귀농인의 집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귀농인의 집 수요조사서를 취합하여 귀농인의 집 확보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 지원대상 마을, 사업량, 입주자 모집, 교육 등 세부 운영방식 등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지사가 제출한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여 도별 사업량과 예산 배분

시·군, 마을(사업신청자)

- 시·군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또는 시군 계획수립)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신청서, 마을단위 「귀농인의 집」 운영 계획서, 빈집 사용 승인서 제출

시·군

- 시·군 홈페이지 등에 사업신청 공고
  - 목적, 신청절차,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을 상세하게 공지
  - \* 지원조건과 다르게 개량한 경우(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건축) 보조사업 취소 및 지원 철회를 반드시 공지할 것
- 당해연도 귀농인의 집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시달되면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확정
  - i) 귀농인의 마을 내 빈집을 확보하여 제공이 가능한 마을
  - ii) 주민 주도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이 있는 지구
  - iii) 기타 도농교류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단체
  - iv) 귀농귀촌인 및 예비 귀농귀촌인 명부를 관리하고 도시민 유치에 적극적인 마을

### < 선정 방식 >

- 지역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 접수
- 신청된 운영계획서에 의거 발표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위원회 구성 : 귀농·귀촌 관련 전문가 5~8명으로 구성
  - 별도의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활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이 확정되면 대상별로 빈집 수리 계획, 시기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주택의 규모, 리모델링 절차 등 사업계획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사전에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 사업대상자가 당초 지원조건과 다르게 주택개량을 하지 않도록(건축면적 초과, 비주거용 건물, 농어촌지역 외에서의 등) 철저히 홍보
- 시·군별 대상자 선정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선정완료시)

#### 각 도

- 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선정 완료시)

## 2.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시·군, 마을(사업대상자)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귀농인의 집 수리 착공계(별지 제6호서식) 제출 및 개량 추진
- 사업발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반 규정에 따름
- 마을은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입주자를 모집
-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입주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 철저한 검증 실시

## 시·군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 수리 상황을 점검하고, 수리가 완료되면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실적 확인 등을 시·군에서 직접 시행
  - 기존 주택의 내·외부 촬영, 준공사진과 대비되도록 사진첩 관리
- 시장·군수는 건축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제공 및 무상 설계지원 등 기술지도 실시
- 시장·군수는 준공된 시설물(토지 포함)을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운영·관리를 마을주민들에게 위탁하였을 경우 마을주민들은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주민자체 유지관리 및 운영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설별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보고 : 익월 5일까지
- 시장·군수는 귀농인의 집 제공 마을과 입주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해 참여도 제고
- 시장·군수는 마을협의회와 협의하여 입주자의 경력(직업·학력·사회활동), 연령 등 입주자 자격요건과 입주기간 등 귀농인의 집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
- 시장·군수와 마을협의회는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
  - \* 입주대상자 : 입주대상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현지에 정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가능
    - 귀농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가족(부부 등)과 함께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단독 입주자는 제외)
    - 입주자는 해당 시·군과의 계약에 따라 전기, 수도요금 등 부담가능

## 각 도

- 도지사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및 사업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농림축산식품장관에게 보고 : 익월 10일까지

### 3. 이행 집행단계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담당자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 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 도/시·군

- 귀농인의 집 조성상황과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 목적에 맞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
- 귀농인의 집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다만 빈집을 수리한 경우에는 소유주와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관리
- 시장·군수는 마을 대표자로 하여금 귀농인의 집 거주자 명부를 작성 유지해야 하고, 귀농·귀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당 마을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

#### 《예산의 결산》

- 사업대상자는 군수에게 사업완료 보고서와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를 사업 추진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
- 시장·군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소요자금을 다음 달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교부신청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집행(사업을 일괄 위탁한 경우 교부받은 자금을 위탁시행자에게 일괄 교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결산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제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철회

#### 4. 성과측정단계

- 성과측정시기 : 2016. 12월
- 성과측정방법 : 계획대비 추진실적(기본계획, 사업시행 등)
  - 매 년도 말을 기준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를 측정

####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지자체주관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확인평가 실시
-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계획수립에 활용

### IV.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7년도 사업수요조사

#####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조사 계획에 따라 신청서 제출

##### 나. 신청자격 : 시·군 지자체

####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5. 10월경 수요조사를 심사하여 시군별 배정



(별지 제2호서식)

## 「귀농인의 집」 운영계획서

### 1. 사업 주관마을 및 단체

-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연락처 :
- 주요활동

### 2. 사업 추진방향

- 추진체계 구축
- 지역정착 지원
- 기타 마을 만들기 등 활동 연계 관련

### 3. 사업개요

가. 사업비(자부담 포함)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 마을 자부담이 있을 경우 포함하여 사업비 총계 명시

나. 빈집확보 현황

○ 빈집현황 :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빈집을 선정

소유주						면적(m <sup>2</sup> )		구조	방수	건축 년도
주 소	성명	시군	번	리	지번	대지	건축			

\* 빈집에 대한 사진 5장 이상 첨부(전경, 원경, 내부, 주변사진 등)

다. 세부사업별 소요예산

사업명	세부내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빈집 수리				

#### 4. 귀농인의 집 활용계획

##### 가. 빈집 리모델링

- 지붕 : 지붕교체 여부 등
- 주방과 욕실 : 채래식 혹은 입식 여부, 싱크대 교체 여부
- 화장실 : 채래식 혹은 수세식 여부
- 방 도배, 장판 교체 여부 등
- \* 가족단위 이용자를 고려하여 주거할 수 있는 방은 최소 2개 이상 확보

##### 나. 활용계획

- 입주자 모집 및 선정방식
- 귀농인의 집 이용자와 지역주민과의 교류 계획
- 귀농인의 집 임대료 징수 여부
- 귀농인의 집 이용자 부재시 관리계획 등

#### 5. 귀농인의 집 입주자에 대한 지원계획

- 마을 차원의 입주자에 대한 세부 지원내역
  - 체험실습장 제공, 농기계 임대 및 알선, 종자, 기자재 제공 여부
  - 영농기술 지도(계절별 작물 선정, 파종, 수확 등)
  - 영농도우미 지정
  - 마을주민과 화합이 장
  - 기타 애로사항 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등





(별지 제4호 서식)

## 귀농인의 집 조성 대상지역 선정결과

[○○도]

### <귀농인의 집 개축>

시군별	마을 대표자	위치 (주소)	사업량 (개소)	개축	면적(m <sup>2</sup> )		건물형태	소요 예산 (천원)
					대지	건물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

### <귀농인의 집 빈집 수리(리모델링 포함)>

시군별	마을 대표자	위치 (주소)	사업량 (개소)	구조	방수	건축 년도	면적(m <sup>2</sup> )		소유주		소요 예산 (천원)
							대지	건물	주소	성명	

\*소요예산은 국비만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 [ /월]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추진실적 보고

1. 사업명 :
2. 회계명 :
3. 사업주체 :
4. 사업추진내용 :
5. 추진현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년 계 획						집 행 실 적(누계)					
	사업량	국고 보조	용자	지방비	자담	계	사업량	국고 보조	용자	지방비	자담	계

일 정		사업공정 (%)	년간진도(%)		부진원인 또는 문제점
착공일	준공예정일		계획	실적	

### 6. 대책 또는 건의사항

※ 작성요령

1. 예산집행은 원인행위액을 기준으로 하되, 자기자금은 실집행액을 기재한다.
2. 사업추진내용은 6하원칙에 의한 단계별 추진내용을 기재한다.
3.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근본적인 부진원인과 동 해결방안을 기재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착(준) 공 계

1. 사업명
  
2. 시설장소
  
3. 사업기간
  - 착공일
  - 준공(예정)일
  
4. 사업내용
  
5. 기타사항(예상문제점, 특이사항 등)

위와 같이 착(준)공되었기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착(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마을공동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귀 하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지침



## 2016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지침

### □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지원형태	< 신설 >	○ 도시민유치지원 사업 평가를 통하여 집행부진, 평가부진 시 사업대상 제외	○ 지자체의 사업비 집행 등 사업관리 강화 필요
추진기구 운영비	○ 전체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귀농상담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전담인력 확대 등 운영비 소요 증대
교육시간 인정	○ 1박2일이하 투어 귀농교육 시간 불인정	< 삭제 >	○ 지자체 현장교육 필요성 증대
귀농센터 사무실	○ 귀농센터 리모델링비는 가능(매입·임차비 지급 불가)	○ 귀농센터 리모델링비는 가능(매입 지급 불가)	○ 지자체 요청 반영
연차별 사업평가	< 신설 >	○ 연차별 사업평가를 통해 차년도 사업 제외	○ 지자체 사업관리 강화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 장 강형석	044-201-1511
		사무관 손경문	044-201-1518
		주무관 금경연	044-201-1519
시도/시군	농정총괄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 I. 사업개요

#### 1. 목 적

-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별 도시민 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한 도시민 농촌 유치 프로그램 지원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사업량	35개소	40개소	50개소	50개소	70개소
합 계	7,000	8,000	10,000	10,000	14,000
국 고	3,500	4,000	5,000	5,000	7,000
지방비	3,500	4,000	5,000	5,000	7,000

### II.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는 제외)
- \*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 지역 포함.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지자체 귀농·귀촌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을 연계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복합 시·군(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 시·군의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가 도시민 농촌유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지역

##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기구 운영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활동전담기구(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비)에 소요되는 경비(인건비 포함)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하드웨어 구축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30% 이내에서 지원 가능
  - 기존 농업인들과 융화·협력 등을 지향하는 사업 권장
  - 하드웨어부문은 귀농인의 집 또는 귀농·귀촌지원센터(체험·교육·상담 등)의 귀농·귀촌에 필요한 직접적인 연관 부문으로 제한

### \* 지원 가능한 하드웨어 부문(아래 항목은 신규 및 계속 시군 모두 적용)

- 1)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체류에 필요한 임시 거주용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주택(빈집)을 매입·임차하여 수리하는 리모델링 사업비(매입·임차비 집행은 불가)
  - 2) 귀농·귀촌지원센터(이하 “귀농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유희 사무실의 리모델링 사업비 또는 임차비(매입비 집행은 불가)
  - 3) 도시민 농촌이주를 위해 필요한 5호 이하의 소규모 주거단지용 기반조성사업비(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단, 부지매입비는 자부담
  - 4) 귀농귀촌센터 마련 및 예비귀농인의 체험 등에 필요한 체제형 임시 거주용 공간 마련 등
  - 5)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적용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드웨어 부문
- **(소프트웨어 사업비)**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지원
    - 소프트웨어부문은 단계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되, 아래 지원내용을 준수하여 집행
- ### \* 지원 가능한 소프트웨어 부문(아래 항목은 신규 및 계속 시군 모두 적용)
-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시·군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어업회의소, 지역단체, 교육기관, 마을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 위탁 또는 지원 가능(단, 주체별 위탁범위는 참고하되 시·군 자체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1) 시·군/읍·면/귀농귀촌센터 : 귀농·귀촌 희망자 D/B 구축, 출향인사 D/B 구축, 귀농의 날 행사, 도시민 이주가능 지역에 대한 농업·농촌정보 및 주변 환경여건 조사, 이주 도시민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클럽) 운영, 도시민 농촌유치와 연계한 마을발전계획 수립,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개발·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귀농·귀촌 선배, 지역개발전문가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이에 필요한 조사비, 운영비, 컨설팅비, 홍보비의 지원, 기타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비
- 2) 농어업회의소·지역사회단체·농협 : 시·군, 읍·면, 마을단위 프로그램의 종합적 추진, 텃밭제공, 귀농인 대상 지역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사회적기업 참여 및 일자리 알선·제공, 성공 귀농인 멘토 및 귀농·귀촌인의 농업·농촌 체험지(地) 안내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경비
- 3) 교육기관 : 전원생활체험·교육프로그램, 지역이해 및 농촌정서 등 인문교육프로그램, 귀촌 자녀 교육프로그램, 지역주민 커뮤니티 교육프로그램 등 도시민 농촌유치관련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비
  - \* 예) 최대 7일 이내(1박2일 ~ 2박3일 등)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등
- 4) 마을·선도농가 등 : 빈집 등 주거정보·농지정보 제공 및 갱신, 이주예정 귀농·귀촌인 사전 교류·초청행사, 성공한 귀농인 멘토 지정·운영, 마을 참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선도실습장 견학 및 체험 등
  -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째 전체사업비의 10% 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 \*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인센티브 차원의 상품권 증정, 지역특산물 제공과 신규 시·군의 경우는 도시민 유치 홈페이지 구축 비용은 제외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시·군당 3년간 6억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
  - 지방비(50%) 중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25%:25%로 하되,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사업비 연차별 지원 : 1년차 2억원, 2년차 2억원, 3년차 2억원
  - 연차별 지자체 평가를 통하여 집행실적 부진(50%미만), 평가부진 시군은 차년도 사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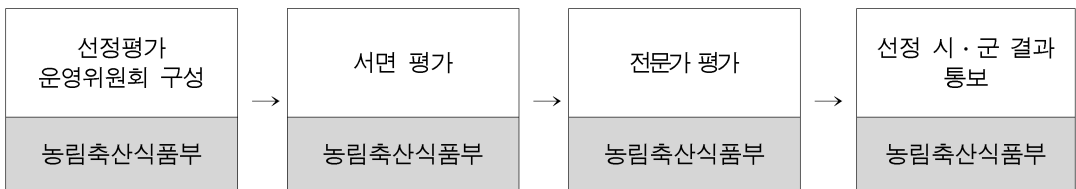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1. 사업신청단계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시·군은 「별표」를 참고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고 각 도는 이를 검토·보완 후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 사업신청 일정은 사업 개시 전년도에 별도 통보
  - \* 시·군은 신청 전 사업 계획서를 도지사로부터 광역 귀농·귀촌계획과 지역특성, 실천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업회의소, 농촌마을, 지역단체, 귀농인협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마을과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
- 시·군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은 단계별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1년차, 2년차, 3년차)로 수립하되, 분야별·항목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로 분리하여 수립
  - \* 연구용역비는 사업 첫해 전체사업비의 10%이내 반영하여 수립 가능

####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군에서 신청한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계획서’에 관하여 예산 확보 등 지자체장의 의지, 사업주체들의 추진역량, 사업의 준비성, 단계별 세부사업(프로그램)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자체 사업실적 등을 심사하여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통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자체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계획’의 평가 및 심의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시·군을 선정



###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세부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선정여부와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추가사항 등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관내 마을, 지역농협, 농어업 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귀농협의회 등에 사업내용 설명
- ※ 선정된 시군은 상기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도의 검토 거쳐 사업시행계획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확정 통보 후 3주내)
  - 사업대상 시·군은 사업계획에 따라 마을, 농어업 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의견을 수시로 수립·보완하는 등 사업관리 철저
  - 시·군의 일반현황(여건 변화), 인구변화 추이 등 분석 반영
  - 도시민 농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재 상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달성 여부 정기적 파악 등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계획의 로드맵 작성 및 달성도 체크
    -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등 연속성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른 시·군 전담기구(귀농센터 등) 설치 및 운영, 각종 하드웨어용 및 소프트웨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연착륙 여부
      - \* 시·군 전담기구 설치 및 관련 업무 부서일원화, 각종 정보제공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창구 설치 및 운영, 정착 귀농인 활용 실태 등
      - \*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 계획(추진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구성 비율)이 실제 지침에 부합하게 이행되는지 여부
    - 사업 참여 주체별 역할 및 프로그램 이행 여부
    - 연도별 투자계획(총사업비 의한 사업추진 내용) 대비 달성 정도
  - 사업 계획에 반영된 도시민 농촌유치관련 자료(출향인사 등) 관리·운영
  - 시·군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각종 협약 이행 여부
  - 도시민 농촌유치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여부
  -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전문가(자문 등) 활용 실태
  - 마을,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 의견수렴 및 반영 정도
  - 지역 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관련 사업추진 현황 실시간 정보제공 등

-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에 따라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인재풀 확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각종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지역 내의 농어업회의소, 지역사회단체, 귀농인협의회 등에게 위탁 또는 공동 추진을 위해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추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읍·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 다만, 지역 내 인재풀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으로 전문연구기관 또는 컨설팅업체 등에 위탁하거나 의뢰할 수 있으나 총 사업기간 중 1년 이내에서 가능
    - \*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간 동안에 지역 내 선도 귀농·귀촌인, 지역 사회단체 등의 지역주민 역량 제고와 인재풀 확대 기회로 활용하되,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으로 안정적인 운영·발전이 바람직함.
- 시장·군수는 필요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도에 <별지 2-1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함(변경 내용이 10%이상일 때는 도지사의 승인 필요)
  - 사업예산 배분비율 내에서 변경 가능(전담기구 20%, 하드웨어 30%, 소프트웨어 50%)
  - 연구용역비는 예산변경 불가
  - 사업계획 중 추진성격에 따른 프로그램 수(증·감) 변경
  - 기타 사업 연도 내에서 추진시기 변경(조정)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 (사업계획 변경 및 승인)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경 승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2-1호 서식>

## 《사업정산》

- 시장·군수는 참가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의 추진상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추진 이행여부를 점검한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 정한 증거자료에 입각, 검정 실시 후 사업비를 집행
  - 시·군에서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중 일부를 지역사회단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거나, 위탁을 체결하여 추진한 경우의 최종 사업비 정산은 시장·군수가 실시

- 도지사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정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3호 서식)하고 잔액은 반납 조치
- 도지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시·군의 사업비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차년도(2년차, 3년차)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

- 시장·군수는 2년차 및 3년차 사업시행 계획서 제출을 위해 전년도 사업추진 결과, 성과 및 문제점, 매년 확보된 사업비 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년도(2년차, 3년차) 사업시행계획을 도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친 후 차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별지2호 서식)

###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비 배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서에 따라 시·도별로 자금 배정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자금배정 내역을 근거로 시·군별로 배정

###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에서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에 의거 참여 마을, 단체, 교육기관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등 사업 부실화 방지 및 사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도지사는 시·군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취합하여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도별 추진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에 참가한 농어업회의소, 마을, 지역사회단체,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 지출시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소요예산 등을 파악한 후 보조금을 지급
  - 프로그램(사업) 성격상 보조금의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의 일부를 관련 규정에 의하여 선지급 할 수 있으며, 참여단체 및 기관 등은 사업완료 후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농어업회의소, 마을, 단체, 교육기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고 사후 제출서류를 보완·관리
- 시장·군수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마을 및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



- 시장·군수가 사업내용 이행, 점검·평가결과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자체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어업회의소, 마을, 지역단체, 교육기관 등의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시행하여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
- 도지사는 시·군의 자체 시행계획서에 의거 추진 중인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취지와 부합 여부, 사업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기타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
  - 사업 시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반기 1회 이상) 점검
  - 사업추진과정상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군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및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점검
  - 필요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컨설팅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6. 성과측정단계

- 익년도 3월에 당해연도 사업 성과지표 측정
  - 사업참여 제출된 시·군 중 사업대상자 확정 시·군 개소수

##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문가 등이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진척도(예산집행, 전담기구설치·운영 등), 귀농·귀촌시책과 연계추진실적, 세부사업(프로그램) 유형별 추진실적, 귀농·귀촌실적, 프로그램 참여실적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여 서면·현장평가를 실시 할 수 있음
  - 매년 하반기 중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시달하고 평가 대상 시·군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각종 증빙서류 등을 성실하게 제출(도 취합)
- 사업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사업비지원 중단) 부여
  -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평가 지침은 별도 통보

#### **IV.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1. 2017도 사업수요조사**

- 2017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별도 시행)를 작성하여 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17년도 예산안 검토

##### **2. 201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계획서(작성예시)

<작성 기준 : 3년을 1주기로 사업 시행계획 작성>

**I. 신청 시·군의 일반현황**(관내 여건 분석, 인구변화 추이, 최근 3년간 귀농·귀촌 추이 등)

**II. 도시민 농촌유치의 비전 및 목표**(현황, 필요성, 비전 및 목표 제시)

- \* (지표 1-1)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구유입 목표를 계량화할 것

**III. 도시민 농촌유치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및 중점시책**

- \* (지표 2-1) 지역특성과 현황을 분석하여 차별화된 사업방향 및 전략 제시

**2. 세부사업 추진계획**

- \* (지표 2-2) 지역사회 자원, 추진체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하게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 [별표]의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예시)을 참조하여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단계별)순으로 구체적 작성(운영 주체도 명시)

- \* (지표 2-2) 예산 배분, 자금조달 및 집행일정, 도·시군 지방비 분담 비율 등 예산 계획 수립

- \* (지표 2-3) 시·군 전담기구(전담부서 및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설치계획에 의거, 정보제공 및 상담창구, 정착 귀농인을 활용한 상담인 지정, 담당부서, 담당자(정·부 지정), 대표 전화 개설 등 구체적으로 기재(귀농귀촌업무와 도시민유치관련부서가 일원화된 시군 우선 선정 가능)

- 전담조직 및 인원이 있을 경우 사업담당자 해당업무 근무기간 등을 세부자료로 제출

- 귀농·귀촌 지원센터는 민(귀농인)·관·단체 및 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구로 설치·운영할 것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본 사업 관련 기존 실적 및 준비현황 자료 별도 제출>

- \* (지표 1-1) 도·시군 각각 귀농귀촌종합계획 등 수립 실적, 시군 귀농귀촌상담센터 운영 현황·실적 및 준비현황 등 관련자료 제출
  - \* (지표 1-2) 군의회, 지역주민, 귀농귀촌인 설명회 등 본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보 노력 등 증빙 및 실적자료 제시
  - \* (지표 1-2) 귀농·귀촌 페스티벌 등 각종 도시민 유치지원을 위한 활동 실적 제출
  - \* (지표 2-3) 농어업회의소, 귀농·귀촌협의회, 귀농귀촌사업 관련 농업인단체 협력사례 등 거버넌스 관련 실적, 협력사례 및 준비현황 등 증빙자료 제출
  - \* (지표 2-3) 귀농·귀촌인과 기존 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상생을 위해 전개하는 사업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할 것(기존 주민 대상 홍보 및 교육, 공동 참여사업 추진 등)
- ※ 본 사업은 지역특성, 지자체별 노력정도, 지역별 양적·질적 편차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에게 재량권과 정책역량을 부여하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지 않거나 사업목적과 상이할 경우 보조금 회수 등 페널티를 부여

### 3.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연계 시책 활용 방안

- \* (지표 1-2) 지자체 자체예산 추가 투입 및 타 산업 연계 실적자료 제시
- \* (지표 1-2) 도시민 유치를 통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연계 방안 제시 등

### 4.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 (지표 3)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및 제시(로드맵 포함)

#### IV.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프로그램명	사업비현황				비고 (추진주체)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①+②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전담기구						
	소 계						
	하드웨어						
	소 계						
	계①						
소프트웨어	정주의향 단계						
	소 계						
	이주준비 단계						
	소 계						
	이주실행 단계						
	소 계						
	이주정착 단계						
	소 계						
	계②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항목간 변경은 반드시 도시사 승인 후 변경 가능(타당할 경우)

#### V. 기 타(특이사항 등)

## 도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시행계획 보고

<시·군별로 작성>

### 1. 사업개요

- 추진 배경
  -
- 목 적
  -
- 사업 시행자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

구분	위탁 단체·기관	대표자	역할 내용	주소

### 2. 프로그램 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명	사 업 비 현 황								비 고
		총 계 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소 계									
	소 계									
○소프트웨어	소 계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 3. 프로그램 주요 내용

구분	항목별	프로그램 명	주요 변경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전담 기구 및 하드 웨어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프 트웨 어	농촌이주 의향단계					
	농촌이주 준비단계					
	농촌이주 실행단계					
농촌이주 후 정착단계						

\* 추진주체는 관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농어업회의소, 마을단위,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용역은 관내 인재 풀 확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하되, 1년 이상의 위탁은 제한

### 4. 사업 시행계획 검토 의견

- \* 해당 시·도는 변경 승인 후 변경 사업내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 강화
- \* 시·도는 광역 귀농·귀촌 정책방안과 시·군의 시책방안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협의·검토 요망

## 도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결과보고

<시·군별로 작성>

### 1. 사업개요

- 변경 사유
  -
- 기대 효과
  -
- 참여 주체 등 참여자 변동 현황
  - 지역사회단체 및 기관 등의 참여내용

구분	위탁 단체·기관	대표자	역할 내용	주소
변경				
당초				

\* 위 서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

### 2. 프로그램 구성현황(해당 없을 시, 양식 생략하고 “해당 없음”로 기재)

(단위 : 백만원)

구분	프로그램명	사업비현황								비고
		총 계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계										
○진담기구 및 하드웨어	소계									
	소계									
○소프트웨어	소계									

\* 사업비는 총사업비(국고+지방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시행완료 연도에 대한 사업비는 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 3. 프로그램 주요 변경 내용(해당 없을 시, 양식 생략하고 “해당 없음”로 기재)

구분	항목별	프로그램명		주요 변경내용	사업기간	추진주체
전담 기구 및 하드 웨어	전담기구	변경				
		당초				
	하드웨어	변경				
		당초				
		변경				
		당초				
소프트 웨어	농촌이주 의향단계	변경				
		당초				
	농촌이주 준비단계	변경				
		당초				
	농촌이주 실행단계	변경				
		당초				
	농촌이주 후 정착단계	변경				
		당초				
		변경				
		당초				

\* 추진주체는 관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내 연계 필요성 등이 있는 경우 농어업회의소, 마을단위, 지역단체 등을 활용, 다만 타 지역 전문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용역은 관내 인재 풀 확대 제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하되, 1년 이상의 위탁은 제한

### 4. 사업 시행계획 변경에 대한 종합 의견

- \* 해당 시·도는 변경 승인 후 변경 사업내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점검 강화
- \* 시·도는 광역 귀농·귀촌 정책방안과 시·군의 시책방안이 조화를 이루고, 지역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협의·검토 요망

##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도별 추진실적 보고(반기)

### 1. 총괄

시·군별	총 계획 프로그램 수	변경 승인(건수)			위탁(발주/건수)			사업완료 여부(건수)				
		요청	승인	미승인	위탁	완료	미발주	합계	완료	추진 중	미추진	
합계												

\* 전체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기재( 예 : 총 계획 프로그램 개수 : 20개, 도에서 변경 승인한 내역, 시·군의 한시적 위탁 내역, 사업완료 여부 등 기재)

### 2. 도시민 유치사업 참여 시·군별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시·군별	구분	항목	프로그램 수	사업 기간	사업비 (국비)	'14까지 집행액	'15 집행 계획			누계 실적
							계획	실적	진도율	
진안군 (예시)	계①+②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전담기구								
		하드웨어								
		소계①								
	소프트웨어	정주의향 단계								
		이주준비 단계								
		이주실행 단계								
이주정착 단계										
		소계②								
장수군										
완주군										
.										

\* 시·군별 작성하되, '15 집행계획 중 실적(%)은 계획 대비 실적과 집행비율이며, 진도율은 항목별 프로그램 진도율을 반기말 기준으로 기재(사업비는 국고 기준)

### 3. 시군별 상담,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실적

시군별	상담 건수	체험프로그램 운영 실적		전담인력채용	
		프로그램운영 횟수	참여자수	인원	기간
○○시	○○건	○건	50명	1명	'14년 2월~10월
○○군	○건	○건	10명	2명	'14년 2월~10월, '14년 8월~10월

\* 전담인력채용은 동 사업비를 통한 인력 채용에 한함.

### 4. 사업 계획상의 문제점 및 보완 대책 등

○ 시·군별 문제점, 주요 특이사항, 변경 사유 등 활성화 방안 보완

### 5. 우수 또는 모범사례 제출

○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관련 참신한 아이디어 등을 바탕으로 우수하거나 모범사례를 제출 요망(채택 시 포상 등 반영 예정)

### 6. 기타

○ 개선사항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침 보완 등

[별표]

## 도시민 농촌유치 프로그램 유형 및 추진기준(권장, 예시)

### □ 전담기구 및 하드웨어

구 분	기반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전담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민 유치활동 전담기구 설치(시·군 조례)</li> <li>- 지역민간협의체 등 활용 가능(상담장구 운영)</li> <li>* 경비(인건비) 지원(전체사업비의 20% 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운영</li> <li>* 시·군 조례 제정 등 근거마련</li> </ul>
하드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 희망자에 농촌농가체험을 위한 장기 체재형 거주 공간 마련(관내 빈집 활용)</li> <li>◦소규모 주거단지 기반조성(5호 이하)</li> <li>- 기존마을 인접 주거를 위한 상하수도, 도로, 부지장비 등</li> <li>* 하드웨어 지원(전체사업비의 30% 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회 완성·운영</li> <li>◦1회 조성 완료</li> </ul>

### □ 소프트웨어

단계별	운영적 프로그램	운영성격
정주의향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li> <li>- 귀농·귀촌 포털(홈페이지) 개설·운영</li> <li>- 귀농·귀촌 매뉴얼 제공</li> <li>- 출향인사 DB구축 및 유대강화</li> <li>- 관내투어(농지, 지역별 재배품목 설명)</li> <li>- 시골집 건축체험</li> <li>◦도시민 농촌유치 홍보물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설, 제작, 운영, 갱신 유대강화</li> </ul>
이주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문화·체험/체득프로그램</li> <li>- 도농한마당(설명회) 및 귀농인 대상 워크숍</li> <li>- 예비귀농인 농사체험</li> <li>- 귀농클럽 등 동호회 운영·상담</li> <li>◦빈집 등 주거정보 제공</li> <li>- 전원택지, 빈집정보</li> <li>- 빈집 체재형 주말농원(하드웨어와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운영</li> <li>- 교육이수자 관리</li> </ul>
이주실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주실행 유도 프로그램</li> <li>- 빈집 임차 운영 및 용자금 알선</li> <li>- One-Stop 행정처리반 운영</li> <li>- 농촌형 일자리 발굴 및 모니터링</li> <li>- 관내 공공기관 신규채용 안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운영</li> <li>- 자료관리</li> </ul>
이주정착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착륙 적용 프로그램</li> <li>- 이주 도시민 멘토링제 운영</li> <li>- 귀농인 적용 페스티벌 개최</li> <li>- 귀촌인 정보실 운영</li> <li>- 귀농·귀촌자 모임 구성</li> <li>- 귀농·귀촌인 적응교육 알선 및 위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시운영</li> </ul>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시행지침



## 2016년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시행지침

### □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5)	변 경(2016)	변경 사유
입소기간	○ 1년 이내	○ 3개월, 6개월, 1년 등	○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입소기간 다양화 필요
우선 입주 대상	○ 39세이하 세대	○ 49세이하 세대	○ 전업농으로의 농업창업이 가능한 연령대로 확대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 장 강형석	044-201-1511
		사무관 손경문	044-201-1518
		주무관 금경연	044-201-1519
소속기관/단체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 I. 사업개요

#### 1. 목 적

- 도시민 등 귀농 실행 단계에 있는 예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농촌이해, 농촌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및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One-Stop 지원센터 건립·운영
- 도시민의 귀농·귀촌 관심에 부응하고 귀농 실행단계에서 두려움 해소와 안정적 정착 기회 제공

####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 2(귀농어업인의 육성)

#### 3. 성과목표 및 지표

- 2017년까지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 8개소(각 30~50세대)를 조성하여 귀농인에게 영농실습교육 등 농업창업 지원
  - 농업창업 실습·교육을 통한 교육생 만족도 90%이상 제고
  - 입소기간 종료하는 해로부터 2년 이내 60% 이상 귀농정착

####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이후	
사업량	2	3	2	3	1	
사업비	계	16,000	18,000	8,000	120,000	4,000
	보 조	8,000	9,000	4,000	60,000	2,000
	지방비	8,000	9,000	4,000	60,000	2,000

## II.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수도권 및 광역시 제외)

###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은 신청일 현재 귀농 또는 귀농·귀촌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는 시·군으로 한정함
- 참여를 희망하는 시장·군수는 도시민 등 귀농 희망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 의지 및 각종 선행 실적(우수 사례 등), 농업인, 농업인 단체 등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귀농·귀촌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이 갖추어진 시·군을 우선 선정

### 3. 지원대상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건립)에 필요한 하드웨어지원 사업이며, 준공 후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지자체의 재정 지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통한 각종 수익·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입주민의 모집과 조기 적응 및 향후 안정적 정착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귀농·귀촌 활성화에 필요한 전담 조직 및 인원을 확보·배치할 것

###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본 사업은 town형태의 ‘창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도시민 또는 귀농 실행단계의 예비 농업인에게 1년 이내로 일정 공간에서 주거제공과 창업 실습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임
- 주요 체재시설(예) : 주거공간(통나무집·황토집 등), 세대별 텃밭(채소, 고구마 등), 교육시설(세미나실, 상담실 등), 실습농장(과수 및 산채 등 특작), 시설하우스, 공동 퇴비장, 공동자재보관소, 쉼터 등
- \* 총 부지면적은 30,000㎡ 내외 확보, 부지매입비는 총사업비의 25% 이내에서 집행하고 추가 매입비용 발생 시에는 지자체에서 부담할 것
- \* 주거공간(50㎡ 내외), 세대별 텃밭(300㎡ 내외), 교육시설(660㎡ 내외), 공동체 실습농장(3,300㎡ 내외), 및 공동체 시설하우스(1,000㎡ 내외), 공동 퇴비장(100㎡ 내외),

공동 자재보관소(100㎡ 내외) 등으로 구성 단, 세대별 전용면적 등은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할 수 있음

- 공동체 실습농장 구성비(예)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과수·유실수(60%), 약초·산채(20%), 채소밭(20%) 등 최적의 실습·체험 기회 제공
  - \* 과수·유실수 : 해당 지역 특작물(사과, 포도, 자두, 매실, 체리 등) 식재·운영
  - \* 산채·약초 : 두릅, 엄나무, 오가피, 도라지, 취나물, 고사리 등 식재·운영
- 공동체 시설하우스 : 시설을 활용한 계절별 채소 등 재배(쌈채류, 토마토 등)
- 세대별 텃밭 : 입주자별 운영 계획에 따라 자율관리(계절별 채소, 약초 등)
  - \* 공동체농장과 공동체시설은 시·군이 입주자의 의견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최적의 작목선택, 가구당 면적 배분 및 운영 프로그램 등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농특회계/농특세계정
- 지원 기준 : 4,000백만원(2개소×8,000백만원, 국비보조 50%, 2년차 사업)
- 지원액 및 조건 : 시·군당(개소당) 1년간 총사업비 4,000백만원(국고보조 2,000, 지방비 2,000)
  - \* 지방비(50%) 중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은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도와 시·군이 협의·결정하되, 지방비 중 30%이상을 도에서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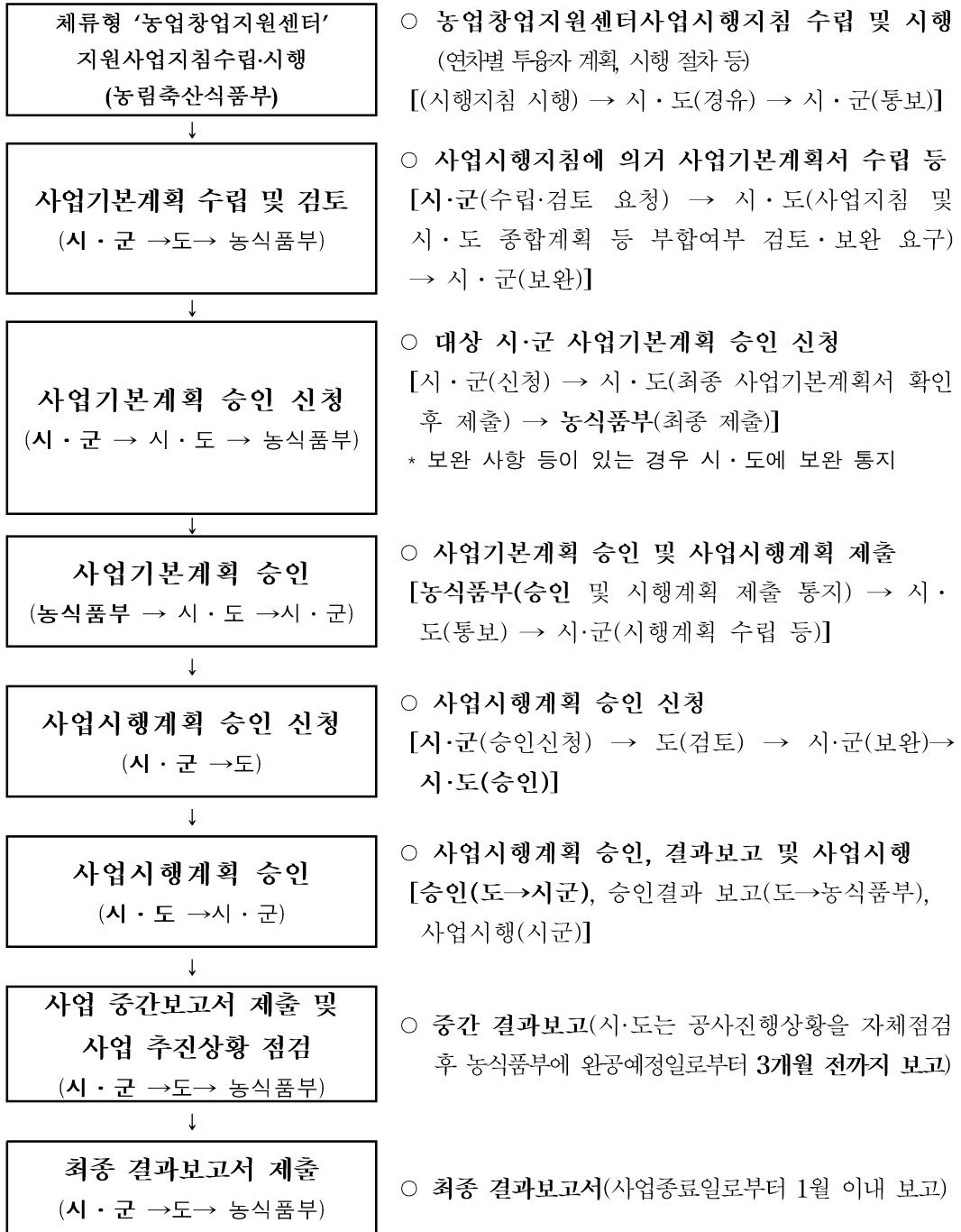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체류형 주택, 농업생산, 창업실습 및 교육시설 등 귀농인 인큐베이터사업
  - '16년도 지원규모 : 6,000백만원(3개소×8,000백만원×50%×50%(2년차사업))
- 총사업비 중 부지매입 비용(총사업비의 25% 이내)은 해당 시·군의 시·군유지를 대체하는 경우 평가액만큼 지방비 부담(현물 부담)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시·군유지로 대체할 경우 해당 시·군은 지방재정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제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2이상에게 의뢰하되,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공개한 경우에만 인정함
  - \* 감정평가 의뢰 및 평가 결과 공개는 본 사업지침 시행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주요 항목 사업내역	수량	산출근거	사업비 (억원)	비 고
계			80.0	
· 부지 조성	33,000㎡	33,000㎡×30천원= 990,000천원	9.9	
· 체류형 주택 조성	30동	30동×15평×5,000천원=2,250,000천원	22.5	
· 세대별농장(텃밭) 조성	30개소	30개소×300㎡×20천원=180,000천원	1.8	
· 공동체실습농장 조성	1개소	1개소×3,300㎡×20천원=66,000천원	0.7	가구당 33평
· 공동체시설하우스 조성	1개소	1동×1,000㎡×100천원=100,000천원	1.0	가구당 10평
· 공동 농가·자재보관소	1동	1동×30평×4,000천원=120,000천원	1.2	가구당 1평
· 공동 퇴비장	1개소	1개소×30평×330천원=10,000천원	0.1	“
· 교육시설(세미나실 포함)	1동	1동×200평×5,000천원=1,000,000천원	10.0	세미나실, 멘토실, 숙소, 관리실, 편의시설 등
· 도로 (진입+단지내)	1,000m	1,000m(B=6m)×330천원=330,000천원	3.3	
· 상하수도, 전기통신	1식	1식	2.5	
· 쉼터 및 기타	1식	1식	3.9	
· 부지매입	33,000㎡	33,000㎡×60천원= 1,980,000천원	19.8	평당 20만원
· 기본·실시시설계·감리	1식	5,690,000천원×5.93%= 337,417천원	3.3	공사비의5.93%

- \* 기타는 체력단련시설 등 여가 시설을 포함한 공동체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한함
- \* 세부사항은 붙임 가이드라인 참조

###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장·군수는 부득이 한 사유로 항목간, 프로그램 변경 등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농식품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할 것

## 1. 사업 신청단계(기본계획 수립·신청 등)

- 시장·군수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사업지침」(이하 '창업지원센터지침')에 의거 지역특성을 반영한 '예비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창업지원센터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3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본 사업의 초기 검토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전담 공무원 및 전문가, 민간 조력자(신지식농업인 등 선도농업인, 귀농귀촌협의회, 농업인단체 등) 등으로 구성된 9인 이내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 효율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로 하여야 하며 동 운영위원회는 기본계획 검토단계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 운영(상설화)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수립·제출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되, 창업지원센터사업지침 및 시·도 귀농귀촌종합계획 등의 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흡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보완을 요구할 것
  - 보완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는 조속한 시일 내 보완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의 기본계획이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이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장관에게 당해연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함

## 2. 사업 승인단계

- 농식품부장관은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시·군 기본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여 부합할 경우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기본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도에 보완 후 재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함
  - 기본계획 승인 통보 시, 해당 시·군별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통지하여야 함

### 3. 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 및 보고 단계

- 시·도지사는 해당 시·군이 기본계획에 의거 구체화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와 협의(검토 및 보완)를 한 후 이를 승인하고 그 승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해당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 통지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시행계획을 최종 보완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4. 사업 시행단계

-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최종 시행계획의 승인을 득한 후 지체 없이 동 시행계획에 의거 착공 등을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승인
  - 시·군은 기본계획 변경이나 시행계획을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다음의 항목사업 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각 주요 항목사업 간 총 사업비의 변경 시,
    - \* 10%미만 :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조정
    - \* 20 ~ 50%미만 :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 후 시행
    - \* 50%이상 계획변경(취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승인 후 시행 가능
- ※ 항목 내 세부내역 조정은 협의대상 아니며, 다만 토지 구입비는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비율 이상의 증액 변경은 불가하며, 부족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가 부담할 것
- 사업계획 변경 시 협의 절차
  - 시·군은 사전에 계획변경 내용과 사유를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 목적과 법령 위배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승인하여야 하며, 제 규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반려·보완 등의 조치를 하고, 타당할 경우에는 승인 후에 지체 없이 최종 사업계획서(신·구대비표 포함)를 농식품부에 제출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계획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5.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도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로 자금 배정
- 도는 분기별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금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 6. 이행점검단계

###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시·군)의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도(시·군)는 전자시스템(E호조)과 연계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 7.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창업지원센터 예비귀농인 입소률, 교육생 만족도, 교육생 귀농정착률이며, 해당 시·군에서는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분석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예비귀농인 입소률과 입소가구 만족도는 교육기간 종료 후 조사하며, 입소자 귀농정착률(교육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귀농 정착율)은 2017년 2월말까지의 정착률을 조사

##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업 중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의 성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차기 사업지침 수립 시 개선·보완 추진

## IV.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 1. 세부운영 기준

- 아래 기준을 포함한 세부운영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배포한 별도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매뉴얼”과 “표준교육과정”을 준용한다.

○(모집방법) 공개모집, 입소 3개월전

\* 공고내용: 신청시기, 입소예정일, 세대수, 신청자격, 교육비 등

○(자격기준) 귀농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의)

**※ 교육생 선정 우선입소 대상 순위**

- ① 만20세 이상부터 49세이하 : 입소정원의 30% 우대
- ② 북한이탈주민(새터민) : 입소정원의 10% 우대
- ③ 단독세대 : 입소 정원의 10% 우대

○(입소기간) 1년이내의 기간(3개월, 6개월, 1년 등)

**2. 예산 편성·운용**

- 광역도 및 시·군에서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관리, 운영인력 등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함(도비, 시·군비)
- 부족한 운영비는 창업지원센터 내 귀농교육 수행, 공동작업 농산물 판매 등으로 조달하여야 함
- 해당 도에서는 도시민, 귀농인 등이 창업지원센터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창업지원센터 운영비는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활용 가능함

**V. 201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7년 신규사업 수요조사**

- 2017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신청 수요조사서(별도 시행)를 작성하여 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사업수요조사서의 수요 및 추진목표를 감안하여 2017년도 예산안 검토

**2. 2017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6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2017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에 대해 공모신청, 평가 등을 하여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

## 개소당 사업비 산출근거(안)

### 1. 사업량

#### ○ 부지면적 : 33,000m<sup>2</sup>

- 체재형 주택 : 50m<sup>2</sup>/동×5×30동 = 7,500m<sup>2</sup> ※5=건폐율 20%
- 세대별농장(텃밭) : 300m<sup>2</sup>×30개소 = 9,000m<sup>2</sup>
- 공동실습농장 : 3,300m<sup>2</sup>×1개소 = 3,300m<sup>2</sup> ※1,000평(가구당 33평)
- 공동시설하우스 : 500m<sup>2</sup>×2동 = 1,000m<sup>2</sup> ※가구당 10평
- 공동농자재보관소 : 100m<sup>2</sup>×5×1동 = 500m<sup>2</sup> ※가구당 1평
- 공동퇴비장 : 100m<sup>2</sup>×1개소 = 100m<sup>2</sup> ※가구당 1평
- 교육시설 : 660m<sup>2</sup>/동×5×1동 = 3,300m<sup>2</sup> ※공동시설 포함
- 도로(진입+단지) : 1,000m×7m = 7,000m<sup>2</sup> ※진입도로 비탈면 포함
- 쉼터조성 기타 : 1식 = 1,300m<sup>2</sup>

#### ○ 주요시설 : 체재시설 외 9종

- 부지조성 : 33,000m<sup>2</sup> ※진입도로, 단지 구역계 비탈면 포함
- 체재형주택 : 30동 (50m<sup>2</sup>/동) ※통나무집·황토집 등/ 15평(헛간 2평 포함)
- 세대별농장(텃밭) : 30개소(300m<sup>2</sup>/개소) ※과수, 약초, 산채, 채소, 고구마, 화훼 등
- 공동실습농장 : 1개소(3,300m<sup>2</sup>) ※농작물 재배, 포장, 마케팅 공동체협
- 공동시설하우스 : 2동(500m<sup>2</sup>/동) ※시설채소 등 공동재배
- 공동농자재보관소 : 1동(100m<sup>2</sup>/동) ※농기계, 농업자재 보관
- 공동퇴비장 : 1개소(100m<sup>2</sup>) ※비가림시설 포함
- 교육시설 : 1동(660m<sup>2</sup>/동) ※세미나실, 관리실, 멘토실, 숙소, 편의시설 등
- 도로(집앞+단지내) : 1,000m(200+800) ※B=7m(포장폭 5~6m)
- 상하수도, 전기통신 : 1식 ※광역상수도 및 마을하수도 본관 연결
- 쉼터 및 기타 : 1식 ※정자 벤치, 연못, 운동시설, 조경 등

## 2. 사 업 비 : 8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세부 사업내역	수량	산출근거	사업비 (억원)	비 고
계			80.0	
· 부지조성	33,000㎡	33,000㎡×30천원= 990,000천원	9.9	
· 체제형 주택 조성	30동	30동×15평×5,000천원=2,250,000천원	22.5	
· 세대별농장(텃밭) 조성	30개소	30개소×300㎡×20천원=180,000천원	1.8	
· 공동체실습농장 조성	1개소	1개소×3,300㎡×20천원=66,000천원	0.7	가구당 33평
· 공동체시설하우스 조성	1개소	1동×1,000㎡×100천원=100,000천원	1.0	가구당 10평
· 공동 농가·자재보관소	1동	1동×30평×4,000천원=120,000천원	1.2	가구당 1평
· 공동 퇴비장	1개소	1개소×30평×330천원=10,000천원	0.1	“
· 교육시설(세미나실 포함)	1동	1동×200평×5,000천원=1,000,000천원	10.0	세미나실, 멘토실, 숙소, 관리실, 편의시설 등
· 도로(진입+단지내)	1,000m	1,000m(B=6m)×330천원=330,000천원	3.3	
· 상하수도, 전기통신	1식	1식	2.5	
· 쉼터 및 기타	1식	1식	3.9	
· 부지매입	33,000㎡	33,000㎡×60천원= 1,980,000천원	19.8	평당 20만원
· 기본·실시시설계·감리	1식	5,690,000천원×5.93%= 337,417천원	3.3	공사비의5.93%

※ 부지매입은 시·군유지로 대체 가능하며 세대별 주거면적은 다양한 유형으로 신축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 귀농 정착 계획서

1. 자기소개(가족소개 포함)

2. 귀농 결심 동기 및 귀농준비정도

3.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생활계획

4. 교육 후 귀농 농업 창업 계획

※ 계획서 분량 : 제한없음

(별표 1)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심사기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 세부항목	배점	점수
1	귀농의지 (30)	○ 해당지역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10	
		○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	10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소계획 - 2명 이상(5점), 1명(1점)	5	
		○ 연령 분포 - 만20세 이상 ~ 만39세 이하(5점) - 만40세 이상 ~ 만49세 이하(3점) - 만50세 이상 ~ 만59세 이하(2점) - 만60세 이상 ~ 만70세 이하(1점) - 만70세 이상~(0점)	5	
2	귀농준비 및 계획 적정성 (30)	○ 귀농 및 창업 계획의 구체성, 실천 가능성	15	
		○ 귀농교육이수실적 - 100시간 이상(10점) - 50시간 이상~100시간 미만(5점) - 30시간 이상~50시간 미만(3점) - 1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1점) - 10시간 미만(0점)	10	
		○ 농업창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 보유 현황 - 3개 이상(5점), 2개(3점), 1개(1점)	5	
3	농촌정착 가능성 (40)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공동체생활 적합성	10	
		○ 향후 농업인으로서의 자질, 발전 가능성	15	
		○ 지역발전 기여 가능성 등 종합평가	15	
합계(100)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사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정책과 귀농귀촌계(044-201-151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